

## 主題

#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유효경쟁정책 시행의 당연성

LG텔레콤 장기주

## 차례

- I. 유효경쟁 정책의 의의
- II. 유효경쟁 정책 현황
- III. 요약 및 결론

최근 통신시장의 비대칭규제에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, 당사는 유효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이를 이해하고 당사의 견해를 기술함.

## I. 유효경쟁 정책의 의의

### 1. 유효경쟁 정책의 필요성

통신산업은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력 집중화가 보다 용이하고 장기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, 유효경쟁 정책의 도입을 통하여 통신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함.

#### 1.1 통신산업의 특수성

가. 일단 독점구도가 형성되면 경쟁상태로의 복원 불가능

○ 통신서비스는 전환비용이 매우 크고, 기존 가입자의 고착효과가 발생함

#### 나. 독점도는 보다 가속화함

○ 수요측면에서 망외부 효과로 인하여 쿠데타 효과가 발생하고, 공급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매우 큽니다.

#### 다. 독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보다 강함

- 통신산업의 시스템적·인프라적 성격
- 장치산업(막대한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산업)적 성격
- 합병 또는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에 대해 엄격한 규제 필요

#### 1.2 유효경쟁 정책의 중요성

##### 가. 이용자 편익의 증진

○ 요금경쟁 활성화,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다양한

서비스에 대한 선택폭을 제공

확보 이후에는 공정경쟁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

#### 나. 통신산업의 경쟁활성화 및 균형적 발전

-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활성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
- 전후방 사업자의 통신서비스에 대해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완화

#### 다. 국제 경쟁력 제고

- 우리나라의 통신산업을 창의적이고 다양하게 발전시킴
- 지배적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개별 통신사업자의 국제 경쟁력 확보
- 시스템 및 단말기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

#### 1.3 유효경쟁 정책의 필요성

##### 가. 전통적 독과점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성

-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독과점정책이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는데 사용되어 왔음
  - 적극적 시장개입보다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개입함
- 그런데, 이러한 독과점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반성이 제기됨
  - 즉, 지배적사업자의 반경쟁적인 행위를 막는 정도의 소극적인 정책만 가지고는 이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

##### 나.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유효경쟁 정책

- 유효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에,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해제하여 경쟁적 시장구조를 만든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됨
- 따라서, 후발사업자에 유리한 정책을 통하여 유효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, 유효경쟁의

#### 2. 이동전화시장의 경제력 집중화

현재 이동전화시장의 경쟁환경은 망외부 효과 및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의한 경제력 집중화를 지속 또는 강화시키고 있음(후발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).

##### 2.1 망외부 효과로 인한 지배력 강화

###### 가. 망외부 효과의 의의

- 망외부 효과(network externality)란 가격과 품질 이외에 가입자수 자체가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함
  - 즉, 신규 가입을 원하는 가입자는 기존의 가입자가 많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

##### 나. 망외부 효과에 의한 쿨림효과

- 망외부 효과에 의하여 가입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음
  - 같은 망에 가입해 있는 가입자에게 통신할 경우 망 식별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되는데, 가입자가 적은 후발사업자의 경우 통화할 수 있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함
  - 망내 및 장기가입자 요금할인, 마일리지 및 멤버쉽제도 제공 등의 제도들은 가입자가 많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망내통화량의 비율의 우위, 제휴사업자와의 교섭력의 우위 등으로 인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

## 2.2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한 지배력 강화

### 가. 매출액 대비 N/W투자액의 절대 우위

-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누적매출액에서 N/W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가입자가 절대적으로 많아 원천적으로 비지배적사업자보다 BEP를 달성하기 쉬운 구조임

### 나. 우월한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한 지배력 강화

-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과거 독점시대에 발생한 이윤을 망투자에 활용하여 제품을 차별화시킴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
  - 이는 후발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게 만드는 역차별에 해당됨

## 3. 경제력 집중화의 문제점

경제력 집중화로 인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과 후발사업자 퇴출 등의 문제점 발생.

### 3.1 시장지배력의 남용

#### 가. 한국통신의 재판매로 인하여 유선 독점력이 무선으로 전이

- 한국통신은 전화사업 등의 독점력을 이동전화 시장에 전이시킴으로써, KT프리텔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킴

#### 나. 우월한 단말기 구매 교섭력을 활용한 단말기 시장 지배

- 단말기 구매물량이 많은 이동전화사업자는 Volume Incentive를 통해 단말기 구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
- 또한, 단말기 개발에서 우선권을 가짐으로써 단말기를 조기 출시하여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음

## 3.2 후발사업자의 퇴출(수익성 양극화)

### 가. 고정비용의 절대우위로 인한 수익성 양극화

- 통신산업은 단기적으로 높은 고정비용을 나타내는 산업이므로, 가입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낮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경쟁에서 매우 유리함

### 나. 수익창출능력의 절대 우위로 인한 수익성 양극화

- 선시장진입에 의해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은 유·무형의 경쟁우위를 통해 높은 수익창출능력을 가지게 됨
  - 유형의 경쟁우위로서 앞서 언급한 규모의 경제, 초기 감가상각에 의한 투자회수 등을 들 수 있으며,
  - 무형의 경쟁우위로는 지배적사업자로서의 브랜드 우위, 사업자 식별번호의 인지도 등을 들 수 있음
- 따라서, 지배적사업자는 수익창출능력을 투자 및 환축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고, 후발사업자와의 수익성 양극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음

## II. 유효경쟁 정책 현황

### 1. 국내 유효경쟁 정책 현황

#### 1.1 전기통신사업법

##### 가.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

-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, 규제제도에 따라 비대칭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규정

## 나.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

구 분	지정 기준	유력사업자	규제 내용
상호접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수설비보유사업자</li> <li>○ 시장점유율 기준사업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역무별 매출액이 고시금액을 초과</li> <li>-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인 사업자</li> </ul> </li> </ul>	KT 시내 SKT 이동	제공 의무 Unbundling 협정 인가
공동사용 정보제공	상 동	상 동	제공 의무
설비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수설비보유사업자</li> <li>○ 시장점유율 기준사업자</li> </ul>	-	제공 의무
이용약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매출액 기준사업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역무별 매출액이 고시금액을 초과</li> <li>-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</li> </ul> </li> </ul>	KT 시내 SKT/STI 이동	요금 인가
금지행위	상 동	상 동	결합판매 금지
과징금 부과	상 동	상 동	차등 부과

### 1.2 공정거래법

#### 가.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정의

-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
  - 시장점유율,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,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-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
  - 일정한 거래분야에서
    -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% 이상
    -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% 이상(단, 10%미만인 사업자는 제외)

#### 나.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 규제

- 상품가격이나 용역대가를 부당하게 결정·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
-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 하는 행위
-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
-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
-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

### 1.3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문제점(사업법 중심)

#### 가. 통신산업의 특수성 반영 미흡

- 통신산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과는 달리 특수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
  -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동일 시장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, 협행 사업법에서는 1개의 1위 사업자만을 지정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

#### 나.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의 전이 미반영

- 전기통신사업금지행위유형 및 기준에서 전기통신

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,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나, 이런 적용사항이 없음  
- 예를 들면,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직간접으로 수행하는 별정사업

#### 다. 획일적인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기준

- 역무별 매출액의 산정기준 불명확

### 2. EU 유효경쟁 정책 사례

#### 2.1 SMP보유사업자에 대한 규제 배경

##### 가.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

- EU는 통신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평가 및 SMP(Significant Market Power)보유 사업자의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

##### 나.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반영

- 장치산업인 통신산업에 있어서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SMP보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의지를 반영함  
※ EU, ONP(Open N/W Provision) Voice Telephony Directive 98/10/ EC, Licensing Directive 97/13/EC, Interconnection Directive 97/33/ EC

#### 2.2 SMP보유사업자의 지정

##### 가. SMP보유사업자의 정의

- EU에서는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SMP를 보유한 사업자로 정의

※ EU의 경쟁법(Competition Law)에서는 시장점유율 50% 이상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지만, 통신과 관련해서는 EU상호접속지침서(Interconnection Directive)에서 시장점유율이 25% 이상인 사업자를 SMP보유사업자라 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간주

- EU회원국의 규제기관(NRA :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)은 개별서비스시장(유선, 무선, 회선임대)에서 시장점유율이 25%이상인 사업자를 SMP보유사업자로 전제
  - 다만, 시장점유율이 25%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가능
    -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 대한 영향정도 / 시장 규모대비 매출액 비중 / 최종이용자에 대한 접근수단의 통제정도 / 자본 조달 능력 / 해당 시장에서 제품 및 서비스제공에 있어서의 경험
- ※ EU, Interconnection Directive 97/33/EC

#### 2.3 SMP보유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

##### 가.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규제

- EU에서는 EC 경쟁규칙에 따라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 규제  
※ EC 경쟁규칙은 토마조약 Article 86에 포함되어 있으며, 회원국간의 교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
- SMP보유사업자에게 EC 경쟁규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상호접속 및 시장지배력의 통제를 위한 특별의무를 부여  
※ EU, Lisencing Directive 97/13/EC

##### 나. 상호접속

-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 비차별적 접속제공,

정보공개, 접속협정 신고 및 투명성과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, 회계분리, 보편적서비스 의무 등의 특별의무 부여  
※ EU, Interconnection Directive 97/13/EC

#### 다. 요금

- 부대설비 제공을 위한 요금세분화, 투명성과 원가에 기초한 이용요금 산정, 적절한 공시후 요금변경, 적정한 요금회계시스템 등의 의무를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부여  
※ EU, ONP(Open Network Provision)-voice telephony Directive 98/10/EC

#### 2.4. SMP보유 이동전화사업자 지정 현황

구 분		시장점유율(%)	SMP보유사 업자 지정
영국	Vodafone	29.0	지정
	BT Cellnet	25.5	지정
프랑스	France Telecom	47.3	지정
	SFR	35.0	지정
이탈리아	TIM	51.2	지정
	Omnitel	36.8	지정

※ 자료 : Oftel, 「Effective Competition Review : Mobile」, 2001.2

#### 2.5 EU와 우리나라와의 시장집중도 비교

- 우리나라는 최근 기업결합과 합병으로 인해 EU국가보다 시장집중도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.

〈EU 국가의 이동전화시장 HHI지수 현황〉

구 분	영국	프랑스	독일	한국
보급율(%)	61.2	45.2	52.5	57.3
HHI	2,532	3,774	3,405	4,160

1. 2000.10월말 기준(SKT 및 KTF의 기업인수 및 합병을 감안)

2. 자료 : Oftel, 「Effective Competition Review : Mobile」, 2001.2월

※ HHI : 시장집중도 측정 지표

(Herfindahl-Hirschman Index)

- 미국 사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1992년 「수평적 합병 가이드라인(Horizontal Merger Guideline)」에서 HHI지수가 1,800일 경우 집중도가 높은 시장으로 판단, 이때 HHI가 500이상 증가할 경우 합병금지를 고려

#### III. 요약 및 결론

- 통신산업의 특수성과 이용자의 편익증진, 통신 산업 경쟁활성화, 균형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유효한 경쟁정책의 시행은 당연한 것임
-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월등한 망외부 효과, 규모의 경제효과를 토대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음. 이는 결국 비지배적사업자를 퇴출위기로 내몰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- 규제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통신사업 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었지만 사후적으로 규제되고 있어 제도도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임
- 이런 연유에서 EU국가의 SMP 규제수단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EU와 우리나라의 시장집중현황을 비교할 때

우리나라는 기업결합도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되  
므로 국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, EU국가와 행  
하고 있는 규제수준내용보다 실질적이면서 효  
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쟁정책이 반드시 시행  
되어야 할 것임.



### 장기주

고려대학교 영문학, U.S.F  
대학원 경영학(MBA), LG  
그룹 회장실, LG텔레콤 대  
외협력담당 상무(현재)